

#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관할 지역의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).

### 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